제432회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행정대집행 적용 특례 확대 및 이행강제금 부과 근거 신설 등〉
▣ 한병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335호)

2026. 2.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나 아 정

목 차

Ⅰ. 제안경위 ····· 1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1

Ⅲ. 검토의견 ····· 3

1. 소하천 예정지 지정·고시의 유효기간 단축 ····· 3

2. 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 확대 및 이행강제금 부과 근거 신설 ····· 7

3. 점용료등·변상금·수수료의 금액과 징수방법에 대한 위임 형식 구체화 ····· 13

Ⅰ. 제안경위

1. 제 안 자 : 한병도의원 등 11인

2. 제안연월일 : 2025. 11. 17.

3. 회부연월일 : 2025. 11. 18.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의 소하천 정비계획 등에 따라 소하천 구역으로 편입될 토지가 있는 경우 관리청은 그 토지를 소하천 예정지로 지정·고시하되, 지정·고시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소하천 정비사업이 착수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지정효력이 상실됨. 그러나, 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소유주 등은 3년이라는 기간 동안 해당 토지의 이용이 제한되는 등 재산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관리청은 소하천 구역에 허가받지 아니하고 설치된 소하천시설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 등의 이전·제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나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제재가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점용료등의 금액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그 금액이 상이하여 형평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하천 예정지 지정의 효력 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고, 불법으로 설치된 인공구조물 이전 등의 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 확대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

며, 점용료등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4항, 제18조의3, 제18조의4 및 제22조제5항).

Ⅲ. 검토의견

1. 소하천 예정지 지정·고시의 유효기간 단축

개정안은 현행법 상 3년으로 규정되어 있는 소하천 예정지 지정·고시의 유효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4항).

현 행	개 정 안
제4조(소하천 예정지의 고시) ① ~ ③ (생 략)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소하천 예정지는 지정·고시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소하천에 관한 사업이 착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의 효력을 잃는다. ⑤ (생 략)	제4조(소하천 예정지의 고시)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2년----------. ⑤ (현행과 같음)

소하천이란 「하천법」의 적용 또는 준용을 받지 아니하는 하천으로서 그 명칭과 구간이 지정·고시된 하천을 말하는데, 현행법은 소하천구역으로 지정·고시되기 이전에 소하천정비종합·중기·시행계획 및 각종 공사계획 등으로 인하여 새로 소하천구역으로 편입될 토지를 '소하천 예정지'로 지정·고시하도록 하고 있음[1].

---

1) **「소하천정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하천"이란 「하천법」의 적용 또는 준용을 받지 아니하는 하천으로서 제3조에 따라 그 명칭과 구간이 지정·고시된 하천을 말한다.
2. "소하천구역"이란 제3조의3에 따라 결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소하천정비법」 제3조(소하천의 지정 및 관리청) ① 소하천(소하천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관련 개념의 정리]

구 분	내 용
소하천	「하천법」 적용 또는 준용을 받지 아니하는 하천*으로서 관리청이 명칭과 구간을 지정·고시한 하천 *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폭 2m 이상 연장 500m 이상인 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구역의 결정에 따라 결정·고시된 토지
소하천 예정지	소하천정비종합·중기·시행계획 및 각종 공사계획 등으로 인하여 새로 소하천구역으로 편입될 토지

(자료 : 행정안전부)

이에 따라 최근 3년(2023~2025년) 소하천 예정지로 지정·고시된 토지의 구역은 2,764개소이나, 이 중 3년 이내에 소하천에 관한 사업이 착수되지 않아 그 지정의 효력이 상실된 구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됨.

조에서 같다)은 특별자치시장·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변경 또는 폐지한다.

「소하천정비법」 제3조의3(소하천구역의 결정) ① 관리청은 제3조제4항에 따른 소하천(소하천시설을 포함한다)의 지정·변경 또는 폐지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을 소하천구역으로 결정하거나 소하천구역을 변경 또는 폐지하여야 한다.

1. 소하천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토지의 구역
2. 소하천시설이 설치된 토지의 구역
3. 제방이 있는 곳은 그 제방으로부터 물이 흐르는 쪽의 토지의 구역

「소하천정비법」 제4조(소하천 예정지의 고시) ① 관리청은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에 관한 계획이나 다른 법률에 따른 각종 공사계획 등으로 인하여 새로 소하천구역으로 편입될 토지가 있을 때에는 그 토지를 소하천 예정지로 지정할 수 있다.

[소하천 예정지 지정·고시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소하천 개소수	소하천 예정지	예정지 고시현황		
			'23년	'24년	'25년
계	**22,037**	**2,764**	**1,333**	**873**	**558**
서 울	21	2	2	-	-
부 산	63	1	-	-	1
대 구	223	1	-	1	-
인 천	113	11	-	7	4
광 주	22	3	3	-	-
대 전	83	31	30	1	-
울 산	133	-	-	-	-
세 종	154	-	-	-	-
경 기	1,984	271	73	56	142
강 원	2,471	479	312	160	7
충 북	1,980	267	-	-	267
충 남	1,987	192	1	168	23
전 북	2,536	524	524	-	-
전 남	3,814	262	256	5	1
경 북	3,476	614	121	449	44
경 남	2,887	89	11	26	52
제 주	90	17	-	-	17

(자료 : 행정안전부)

소하천 예정지로 지정·고시된 토지는 교량, 암거, 복개구조물, 세월교, 보 등 유수의 흐름·치수·이수·이용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공구조물의 설치가 제한되는데[2], 개정안은 소하천 예정지 지정·고시의 유효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여 소하천 예정지 소유자의 권리가 제한되는 기간을 축소하려는 긍정적인 취지가 있다고 보임.

2) **「소하천정비법」 제15조(허가의 제한 등)** 관리청은 재해 발생의 위험이 있거나 소하천등 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4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수리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4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소하천 예정지에서는 인공구조물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일정한 지정·고시의 유효기간은 해당 지정·고시로 달성하려는 입법 목적 내지 공익상의 필요와 그로 인해 제한 또는 침해를 받게 되는 권리를 비교형량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하천법」의 경우에는 종전에 하천 예정지 지정·고시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있었으나, 하천 예정지의 지정으로 인한 손실을 제대로 보상하지 않은 채 행위 제한만 이루어지고 있어 국민의 사유재산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관련 조항을 삭제하여 별도의 예정지 지정·고시를 하지 않고 있음[3].

행정안전부는 토지 소유자의 토지이용 불편 최소화를 통한 규제 완화 차원에서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임.

3) [하천법, 법률 제13493호, 2015. 8. 11.,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 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 확대 및 이행강제금 부과 근거 신설

개정안은 현행법 상 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 요건에 반복적, 상습적으로 소하천의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경우를 추가하고(안 제18조의3제1항), 관리청의 인공구조물 등 물건의 이전·제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4).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의3(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 ① 관리청은 수해방지 등을 위하여 긴급한 실시가 필요한 경우로서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에 따르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점용물 등의 제거,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 설> ②·③ (생 략) <신 설>	제18조의3(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 1. 수해방지 및 안전에 지장을 주는 등 긴급한 실시가 필요한 경우 2. 반복적, 상습적으로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경우 ②·③ (현행과 같음) 제18조의4(이행강제금) ① 관리청은 제17조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고 그 정한 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

현 행	개 정 안
	하지 아니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조치명령이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문서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및 불복 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관리청은 최초의 조치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1년에 2회의 범위에서 그 조치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⑤ 관리청은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⑥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현 행	개 정 안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⑦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법은 소하천등에서 유수의 점용, 토지의 점용 등 일정한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4],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가설건축물 설치, 평상·그늘막 설치, 무허가 영업 등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하천등에서 무단 점용·사용 행위를 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고 있음.

[소하천 무단점용 현황(2025.11. 기준)]

(단위 : 건)

구 분	총계	가설건축물	평상·그늘막	무허가식당업	불법상행위	불법경작	기타
소하천	168	41	45	5	6	14	57
조치완료	153	32	45	5	5	13	53
조치 중	15	9 (과태료 9)	-	-	1 (원상복구 명령)	1 (과태료)	4 (고발 3, 강제철거1)

(자료 : 행정안전부)

4) 「소하천정비법」 제14조(소하천등의 점용 등) ① 소하천등(소하천 예정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유수(流水)의 점용
2. 토지의 점용
3. 소하천시설의 점용·신축·개축·변경 또는 제거
4. 그 밖의 인공구조물의 신축·개축 또는 변경
5. 토지의 굴착·성토(盛土) 또는 절토(切土), 그 밖에 토지의 형상 변경
6. 토석(土石)·모래·자갈·죽목(竹木), 그 밖의 소하천등 산출물의 채취
7. 그 밖에 소하천등의 형상과 기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행위

이러한 무단 점용·사용 행위에 대해서 현행법은 관리청으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5], 수해방지 등을 위하여 긴급한 실시가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의 적용 특례를 도입하여 일반적인 행정대집행의 절차[6]에 따르지 아니하고도 점용물 등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반복적·상습적인 무단 점용·사용 행위에 대해서는 실효적인 제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는 바, 개정안은 이러한 행위를 「행정대집행법」의 적용 특례 대상이 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인공구조물 등의 이전·제거 등과 관련한 관리청의 조치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대상이 되도록 하여 소하천 인근의 무단

---

5) **「소하천정비법」 제17조(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 허가 또는 제14조에 따른 점용·사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해당 인공구조물 또는 그 밖의 물건의 이전·제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0조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 허가나 제14조에 따른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
2.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하천등 정비를 한 경우
3. 제10조제6항을 위반하여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4.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수의 점용 등을 한 경우**
5. 제14조제5항을 위반하여 점용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6. 제15조에 따른 소하천 예정지에서의 인공구조물 설치 제한을 위반한 경우
7. 제16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8. 다른 법령에 따라 관계 행정청의 허가·인가 또는 그 밖의 처분을 받아야 할 경우에 이를 받지 못하거나 이를 받은 후 취소되었거나 그 효력이 실효되어 이 법에 따른 허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9. 허가에 관계되는 공사나 그 밖의 행위 또는 이와 관계되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폐지된 경우

6) **「행정대집행법」 제3조(대집행의 절차)** ①전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하 대집행이라 한다)을 하려함에 있어서는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청은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함에 있어 의무의 성질·내용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해당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의무자가 전항의 계고를 받고 지정기한까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행정청은 대집행영장으로써 대집행을 할 시기, 대집행을 시키기 위하여 파견하는 집행책임자의 성명과 대집행에 요하는 비용의 개산에 의한 견적액을 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비상시 또는 위험이 절박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행위의 급속한 실시를 요하여 전2항에 규정한 수속을 취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그 수속을 거치지 아니하고 대집행을 할 수 있다.

점용·사용 행위를 규제하고 소하천 안전관리 등에 기여할 수 있는 긍정적인 취지가 있다고 보임.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첫째, 이행강제금의 액수(안 제18조의제1항)에 대해서는 유사 입법례를 참조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최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의결(2025.11.24., 법사위 의결 2025.12.10.)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215139)은 하천관리청의 원상회복 또는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액수를 개정안과 동일하게 1천만원 이하로 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제재의 정도는 적절하다고 보임[7].

둘째, 이행강제금의 반복적 부과(안 제18조의4제4항)와 관련하여, 이행강제금은 일정한 의무이행상태를 확보하기 위해 반복적인 부과가 가능하지만, 반복적 부과가 필수적인 것은 아니므로 법 문언의 명확성을 위해 '1년에 2회의 범위'를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참고로,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건축법」의 경우에도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로 반복적 부과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있음[8].

---

7) 제99조(이행강제금) ① 하천관리청은 제48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이나 제69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원상회복 명령이나 조치명령에서 정한 시정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u>1천만원 이하</u>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8)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 ⑤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u>1년에 2회 이내의 범위</u>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그 시정명령이 이

셋째, 이행강제금 부과 중지 요건(안 제18조의4제5항)과 관련하여, 개정안은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만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를 즉시 중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조치명령 이행 외에 다른 수단으로 의무이행 상태가 확보되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가 필요없게 되는 경우도 중지 요건에 추가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조치명령이 인공구조물 또는 그 밖의 물건의 이전·제거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어 관리청의 행정대집행을 통해 의무이행 상태가 확보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행강제금 부과 중지 요건에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을 받은 경우"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9].

한편, 행정안전부는 개정안에 따라 무단 점용·사용 등 불법 행위에 대해 신속한 행정대집행을 통한 정비 및 이행강제금 부과를 통한 자진 철거 유도 등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입장임.

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9) 참고로,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의결(2025.11.24., 법사위 의결 2025.12.10.)한 하천법 일부 개정법률안(대안, 2215139)의 경우에도 이행강제금 부과 중지 요건에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을 받은 경우를 포함시키고 있음.

3. 점용료등·변상금·수수료의 금액과 징수방법에 대한 위임 형식 구체화

개정안은 소하천등의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및 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등 산출물의 채취료(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해 부과하는 변상금, 점용·사용 허가에 대한 수수료의 금액과 징수방법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현행 위임 형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구체화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5항).

현 행	개 정 안
제22조(점용료 등의 징수) ① ~ ④ (생 략)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점용료등, 변상금 및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하며, 그 금액과 징수방법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2조(점용료 등의 징수)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현행법에 따라 소하천 관리청이 되는 지방자치단체는 228개이며, 점용료등, 변상금 및 수수료의 금액과 징수방법 등에 대해 조례를 제정한 지방자치단체는 186개로 파악됨.

[지방자치단체별 조례 제정 현황]

시도	관리청 (시군구등)	수립 대상	수립	미수립	미수립 지방자치단체
계	**228**	**198**	**186**	**12**	
서 울	25	8	3	5	강남구, 송파구, 구로구, 강서구, 은평구
부 산	16	8	6	2	서구, 남구
대 구	9	6	5	1	달서구
인 천	10	7	4	3	중구, 남동구, 부평구
광 주	5	5	5	-	
대 전	5	5	5	-	
울 산	5	5	5	-	
세 종	1	1	1	-	
경 기	31	31	31	-	
강 원	18	18	18	-	
충 북	11	11	11	-	
충 남	15	15	15	-	
전 북	14	14	14	-	
전 남	22	22	22	-	
경 북	22	22	21	1	울릉군
경 남	18	18	18	-	
제 주	2	2	2	-	

(자료 : 행정안전부)

각 소하천 관리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점용료등·변상금·수수료의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각 조례별로 금액 및 금액이 조정되는 경우 인상률 상한, 점용일수 등의 계산 방식이 상이하여 소하천 점용·사용 등 동일한 행위에 대해서 소하천 관리청별로 징수하는 금액의 편차가 크게 나타남에 따라 형평성이 저해된다는 지

적이 있음.

일례로 세종특별자치시와 인천광역시 강화군의 '농작물의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의 경우를 비교하면, 점용료 금액과, 점용료의 전년대비 인상률 상한에서 모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세종시는 연간 점용면적에 토지가격의 100분의 1을 곱하여 점용료를 산정하고, 전년도보다 점용료가 5%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최대 5%까지만 점용료를 인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10],

강화군의 경우 연간 전용면적에 토지가격의 100분의 2.5를 곱하여 점용료를 산정하고, 전년도 보다 점용료가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최대 25%까지만 점용료를 인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11].

[점용료등의 인상률 상한에 따른 분류]

구 분	계	인상률 상한			기준 없음
		최대 5%	최대 21.5%	최대 25%	
시군구 개수	**186**	25	1	114	46

(자료 : 행정안전부)

10) 「세종특별자치시 하천 및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제4조(점용료 등의 조정) 해당 연도의 점용료 등이 전년도보다 5퍼센트 이상 증가할 때에는 전년도보다 5퍼센트 증가된 금액으로 점용료 등을 결정한다. 다만, 골재채취료는 그렇지 않다.

11) 「강화군 소하천점용료등 징수조례」 제4조(점용료등의 조정)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하여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 점용료등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등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해 년도의 점용료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2의 점용료등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골재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소하천점용허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 2] (점용료 조정산식) 전년도 보다 500% 이상 증가하는 경우 : 전년도점용료 + [전년도점용료 × 25/100]

점용일수 계산 방식 역시 일할 계산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89개이고, 월할 계산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92개로 차이가 있으며, 월할 계산 방식 내에서도 15일을 초과하는 일수를 1개월로 계산하는 방식, 일수에 관계없이 1개월 미만의 일수를 모두 1개월로 계산하는 방식 등 지방자치단체별로 규정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남.

[점용일수 계산 방식에 따른 분류]

구 분	계	일할 계산	월할 계산			기준 없음
			유형1	유형2	유형3	
시군구 개수	**186**	89	81	6	5	5

(자료 : 행정안전부)

※ 유형1 : 점용일수 15일 초과시 1개월로 계산
유형2 : 총점용 또는 사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계산
유형3 : 규정은 있으나 미비한 사례(예 : 조례 본문과 별표의 내용이 상이하여 정확한 점용기간 산정 불가 등)

이에 따라 개정안은 점용료등, 변상금, 수수료의 금액 및 징수방법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그 범위를 1차적으로 구체화하고, 해당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를 정하도록 하여 형평성을 개선하려는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임.

다만, 조례로 정할 사항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지방자치법」은 조례 제정의 일반적인 원칙으로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하되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12].

이러한 측면에서, 소하천 점용료등·변상금·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주민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에 해당하고, 개정안과 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것은 위임의 한 형식을 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참고로, 유사 입법례인 「하천법」의 경우에도 점용료등과 변상금의 금액과 징수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각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음[13].

행정안전부는 현재 점용에 관한 사항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지정·운영 중으로, 일관성 확보 차원에서 최소한의 기준 등을 시행령에서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14].

문 의 처
02)6788-5349

12)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13) **「하천법」 제37조(점용료등의 징수 및 감면)** ①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토지의 점용료, 그 밖의 하천사용료(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사유(私有)로 되어 있는 하천구역 안에서 제33조제1항제1호・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하천점용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하여 국가하천의 경우 제27조제6항 단서에 따라 시・도지사가 그 하천을 유지・보수하는 때에는 해당 시・도지사를 그 국가하천의 하천관리청으로 본다.
③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을 점용 또는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료등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점용료등과 변상금의 금액 및 징수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그 하천관리청이 속하는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14) 참고로,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개정안에 대한 관련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대상 의견조회 (’25.11.19.~12.3.) 별도의 의견 제출 없었음.